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38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송옥주 · 윤준병 · 오세희
이개호 · 황명선 · 김동아
이원택 · 전종덕 · 주철현
김현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건수가 크게 줄고 있는 반면 사육돼지의 ASF 발생건수는 급증하고 있음. 특히 울릉도·독도·경남·경남·전남·전북 등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의 농장에서 발생이 눈에 띄게 늘어났음.

이런 와중에 국내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가 도축돼 그 혈액의 혈장을 원료로 사용한 양돈사료에서 ASF 병원체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ASF가 사료를 통해서 국내 농장으로 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같은 종의 동물 신체 성분을 해당 동물에게 급여하는 동족 포식사료는 광우병과 같은 질병의 전파를 비롯한 안전성 문제, 그리고 생명윤리적 논란으로 인해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제한함.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안겨다 줄 수 있는 ASF 발생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ASF 발병국들이 규제하는 돼지 혈장을 양

돈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일이나, 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하는 것은 ASF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음.

ASF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유럽, 중국 등 ASF 발병국들이 금지하는 남은 음식물 사료는 지난 2019년 ASF 발병과 함께 국내에서 급여가 중단됨. 그러나 2024년 10월부터 급여가 재개돼 최근 ASF 확산과 더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가축의 혈액은 사료나 화장품,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래서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수립해 질병 전파를 통제하는 일은 도축 부산물의 재활용에도 도움을 줄 것임.

이에 따라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을 사료로 이용하는 일을 제한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함.

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규제해서 가축의 전염병 감염과 축산물 품질 저하, 불공정 저가 판매행위, 신재생에너지(바이오 가스) 전환 역행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7호의”를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로 한다.

8.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지질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 및 남은 음식물로 만든 것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 그 제한의 기준 및 정도, 검사 및 관리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p>② 누구든지 동물들에게 <u>제1항 제7호의</u>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④ (생 략)</p> <p>제15조(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등) ① ~ ③ (생 략)</p> <p><u><신 설></u></p>	<p>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지질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 및 남은 음식물로 만든 것</u></p> <p>② -----<u>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u></p>

<신 설>

적으로 검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 그 제한의 기준 및 정도, 검사 및 관리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